

지방공사의료원 사용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2001. 4.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1년 3월 28일
- 회부일자 : 2001년 3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01. 4. 18),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 승 기)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 제2항 제6호(2000. 10. 20) 개정 및 행정자치부 「2001년 공유재산관리지침(2001. 2. 16)」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무상 대부분토록 규정하고 있어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현행 >

'83. 7. 1 독립의료원에서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으로 전환 시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만성적인 누적 적자로 인하여 설치조례(부칙 제8조, '83. 7. 1)에 출자 시 까지 무상 사용토록 조치

나. 심의사항

○ 지방공사의료원 사용 공유재산 무상사용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

- 위 치 :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 부지내
- 토 지 : 사직동 554-6외 2필지 37,767㎡
- 건 물 : 19동 17,497.3㎡
-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출자 시까지
- 회계구분 :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지방공기업회계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

- 위 치 :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 부지내
- 토 지 : 문화동 1654외 8필지 15,3837㎡
- 건 물 : 8동 9,440.27㎡
-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출자 시까지
- 회계구분 :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지방공기업회계

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무상사용 재산총괄

<지방공사의료원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 기 관 명 | 재 산 현 황 | | | 비 고 |
|-------------------|-------|---------|-----------|------------|-----|
| | | 건수 | 면적(m') | 금액 | |
| 계 | | 39 | 80,089.57 | 24,928,933 | |
| 무상사용 및 대부허가 | 청주의료원 | 22 | 55,266.30 | 18,563,489 | |
| | 토 지 | 3필지 | 37,769.00 | 10,453,988 | |
| | 건 물 | 19 동 | 17,497.30 | 8,109,501 | |
| | 충주의료원 | 17 | 24,823.27 | 6,365,444 | |
| | 토 지 | 9필지 | 15,383.00 | 3,395,391 | |
| | 건 물 | 8 동 | 9,440.27 | 2,970,053 | |

○ 무상사용 허가 재산의 목록 : 별첨과 같음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지방공사의료원 사용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검토한 바

본 동의안은 그동안 의료원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공유재산을 당해 의료원의 재산처럼 무상 사용하면서 회계를 처리하는 사례와 무상 사용에 따른 수익사항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있었음.

기업의 독립채산원칙을 저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의 개정(2000. 10. 20)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 그동안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의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의 관계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지방공사의료원 사용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지방공사의료원 사용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 무상사용재산 총괄

<지방공사의료원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m², 천원)

| 구 분 | 기 관 명 | 재 산 현 황 | | |
|-------------------|-------|---------|-----------|------------|
| | | 건 수 | 면 적 | 금 액 |
| 계 | 2 | 39 | 80,089.57 | 24,928,933 |
| 무상사용 및 대부허가 | 청주의료원 | 22 | 55,266.30 | 18,563,489 |
| | 토 지 | 3필지 | 37,769.00 | 10,453,988 |
| | 건 물 | 19동 | 17,497.30 | 8,109,501 |
| | 충주의료원 | 17 | 24,823.27 | 6,365,444 |
| | 토 지 | 9필지 | 15,383.00 | 3,395,391 |
| | 건 물 | 8동 | 9,440.27 | 2,970,053 |

2. 무상사용 허가 재산의 목록 : 별첨과 같음

3. 관계법령 : 별 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 제2항 제6호

무상사용어가 공유재산의 현황

| 연번 | 종류별 | 재 산 의 표 시 | | | | 재산가액 | 취득시기 | 소유자 | 비 고 |
|-----------|-------|-----------|---------|------------|-----------|------------|------------|--------|-----------|
| | | 소재지 | 지번 | 구조 (지목) | 면적(㎡) | | | | |
| 계 | | | | | 80,089.57 | 24,928,933 | | | |
| 청 주 의 료 원 | | | | | 55,266.30 | 18,563,489 | | | |
| 토 지 | | 소계 | 3필지 | | 37,769.00 | 10,453,988 | | | |
| 1 | 토지 | 청주시 사직동 | 554-6 | 대지 | 36,876.00 | 10,251,528 | '68.12.28 | 충청북도지사 | 신관 |
| 2 | " | " | 554-7 | 대지 | 732.00 | 157,380 | '68.12.26 | " | 관사 |
| 3 | " | " | 762 | 답 | 161.00 | 45,080 | '91. 4.11 | " | 영안실 |
| 건 물 | | 소계 | 19동 | | 17,497.30 | 8,109,501 | | | |
| 1 | 건물(A) | 청주시사직동 | 554-6외1 | 철근콘크리트 | 2,145.51 | 1,008,173 | '84.11.24 | 충청북도지사 | 병동 |
| 2 | 건물(B) | " | " | " | 537.50 | 278,490 | '91. 11. 1 | " | 영안실 |
| 3 | 건물(C) | " | " | " | 362.94 | 148,287 | '91. 11. 1 | " | 사원주택 |
| 4 | 건물(D) | " | " | 조립식 | 148.00 | 47,390 | '91. 11. 1 | " | 문상객실 |
| 5 | 건물(F) | " | " | 철근콘크리트 | 10,384.00 | 5,572,981 | '93.12. 1 | " | 병동및환의병 |
| 6 | 건물(G) | " | " | " | 1,851.23 | 701,156 | '73. 1. 1 | " | 숙소 |
| 7 | 건물(H) | " | " | " | 180.00 | 96,090 | '94.11. 1 | " | 식당 |
| 8 | 건물(K) | " | " | 경량철골 | 158.20 | 30,979 | '99.12.23 | " | 문상객실 |
| 9 | 건물(P) | " | " | 콘테이너 | 36.00 | 7,050 | '99.12.23 | " | 문상객실 |
| 10 | 건물(Q) | " | " | " | 39.90 | 7,812 | '99.12.23 | " | 문상객실 |
| 11 | 건물(I) | " | " | " | 18.00 | 3,525 | '99.12.23 | " | 식당창고 |
| 12 | 건물(J) | " | " | 조적조 | 21.00 | 5,278 | '99.12.23 | " | 화장실 |
| 13 | 건물(L) | " | " | 경량철골 | 30.00 | 5,875 | '99.12.23 | " | 대청창고,보합차량 |
| 14 | 건물(M) | " | " | 콘테이너 | 18.00 | 3,525 | '99.12.23 | " | 매점 |
| 15 | 건물(N) | " | " | 조적조 | 18.00 | 4,524 | '99.12.23 | " | 화장실 |
| 16 | 건물(O) | " | " | 콘테이너 | 36.00 | 7,050 | '99.12.23 | " | 문상객실창고 |
| 17 | 건물(R) | " | " | 조적조 | 32.40 | 6,080 | '99.12.23 | " | 작업장 |
| 18 | 관사 | " | " | 시멘기와 | 139.62 | 35,976 | '80.12.26 | " | 관사 |
| 19 | 구병동 | " | " | 철 콘 | 1,341.00 | 139,260 | '73. 1. 1 | " | 사후실 간호학병 |
| 총 주 의 료 원 | | | | | 24,823.27 | 6,365,444 | | | |
| 토 지 | | 소계 | 9필지 | | 15,383.00 | 3,395,391 | | | |
| 1 | 토지 | 충주시문화동 | 1654 | 도로 | 721.00 | 194,670 | '83. 7. 1 | 충청북도지사 | 도로 |
| 2 | " | " | 1655 | 대지 | 13,197.00 | 2,837,355 | " | " | 병동및영안실 |
| 3 | " | " | 1656 | 도로 | 231.00 | 49,665 | " | " | 도로 |

| 표인 | 종류별 | 재 산 의 표 시 | | | | 재산가액 | 취득시기 | 소유자 | 비 고 |
|----|--------|-----------|--------|------------|----------|-----------|-----------|--------|--------|
| | | 소재지 | 지번 | 구조 (지목) | 면적(㎡) | | | | |
| 4 | 토지 | 송주시문화동 | 1657 | 도로 | 32.00 | 6,880 | '83. 7. 1 | 충청북도지사 | 진입로 |
| 5 | " | " | 1675 | 대지 | 36.00 | 180 | " | " | " |
| 6 | " | " | 1675-1 | 도로 | 90.00 | 4,536 | " | " | " |
| 7 | " | " | 1676 | 도로 | 93.00 | 4,687 | " | " | " |
| 8 | " | " | 1677 | 대지 | 17.00 | 856 | " | " | " |
| 9 | " | " | 1704 | 대지 | 966.00 | 296,562 | " | " | 기숙사및사택 |
| 기 | | | | | | | | | |
| 1 | 건물(가동) | 송주시문화동 | 1655 | 철근콘크리트 | 6,452.84 | 1,424,598 | '80. 7.10 | 충청북도지사 | 별동(본관) |
| 2 | " (나동) | " | " | 철근콘크리트 | 1,296.26 | 607,301 | '92. 8.24 | " | 별동(신관) |
| 3 | " (라동) | " | " | 철근콘크리트 | 96.10 | 12,850 | '80. 7.10 | " | 변전실 |
| 4 | " (바동) | " | " | 세면벽돌스라브 | 107.65 | 123,967 | '93. 2.12 | " | 세탁실 |
| 5 | " (사동) | " | " | 철근콘크리트 | 619.26 | 459,221 | '00.10.28 | " | 장례식장 |
| 6 | " (아동) | " | " | 세면벽돌스라브 | 23.10 | 9,900 | '00.10.28 | " | 발전기실 |
| 7 | " | " | 1704 | 세면벽돌스라브 | 230.18 | 8,490 | '80. 9.25 | " | 기숙사 |
| 8 | " | " | " | 철근콘크리트 | 614.88 | 323,726 | '92. 9.17 | " | 의사숙소 |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

제82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1>

1.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① 잡종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개정 99.1.21>

<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85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 ①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88조의 규정을, 당해 허가의 취소와 그 취소로 인한 손해보상에 관하여는 제94조 및 제10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0.10.20>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 ②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94.9.29, 99.4.30, 2000.10.20>

6.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